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6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6월 9일

3. 제안이유

법령의 개정등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사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### < 경제과 >

- 상품권법의 폐지('99. 2. 5)에 따른 조문정비
  - 상품권 관리와 관련된 14개 사무 폐지

### < 보건과 >

-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일부 업무가 시·군·출장소에 기 위임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취급자 교육업무도 위임

### < 물관리과 >

- 지하수법의 개정('99. 3. 31)에 따른 조문 정비
  - 지하수 업무과 관련된 일부 사무가 시·군으로 이양됨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등 15개 사무 조문 삭제

### < 축산과 >

-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신규 위임
  - 도축업, 집유업, 축산물가공업 관리업무 14개사무
-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수의사법개정('99. 3. 31)에 따른 조문정비

### < 교통정책과 >

-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방법 변경
  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
  -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무등
- 자동차관리법, 건설기계관리법등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< 기업지원과 >

- 별표6의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사무 민간위탁
  - 부용지방산업단지 : 부용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
  - 대소지방산업단지 : 대소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 협의회

## 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법령의 폐지·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비와 도지사의 권한중 일부를 시장·군수 및 민간에 위임·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내용으로는

- 경제통상국 경제과 소관업무중 상품권법 폐지('99.2.5)에 따른 상품권 관리와 관련된 사무 열네건(14건)의 조문 삭제와 기업지원과의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된 부용·대소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민간위탁과
- 복지환경국 보건과 소관업무중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교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며, 지하수법의 개정으로 그 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 물관리과 소관의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업무등 15개 사무의 조문 삭제와

○ 농정국 축산과 소관업무중 도축업, 집유업, 축산물 가공업 관리 14개의 사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군에 위임하며,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과

○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그 권한이 시도로 이양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관한 사무와 기계식 주차장에 관한 사무의 새로운 조문 신설과

※ 이 업무는 재위임사무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임.

자동차관리법, 건설기계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

○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부분의 사무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각종 업무의 정확한 진단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권한의 위임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## 붙임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